2O25학년도 루터대학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해당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신학과	5		
상담심리학과	23		
사회복지학과	23		
언어치료학과	24		
사회혁신리더학과	10		
계	85		

^{*} 모집 단위 및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 대학 학사구조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모집학과 및 인원

		<u>c</u>	고집단위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 시기	7	P분	전형명	신학과	상담심리 학과	사회복지 학과	언어치료 학과	사회혁신 리더학과	합계											
일반 전형 (정원내)		학생부 교과위주	일	4	20	19	21		64											
수시모집 특별 전형 (정워내)		학생부 교과 위주	고른기회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1	1	1		3										
			성인학습자	만 30세 이상					9	9										
정시모집	일반전형	수능위주	일반전형		1	2	3	2		8										
(다)군	(다)군 (정원내) 학생부 교과		성인호					1	1											
		소	계		5	23	23	24	10	85										
		전형	농(1	1	1		3											
			장애인등 대상자		약간명					약간명										
수시모집	특별 저허		특성화고 등					6	6											
	(정원외)													**재외국민	1					1
			재외국민과 외국인	***외국인	약간명					약간명										
				***북한이탈주민			약간명			약간명										
			농어촌학생			0	0	0		0										
정시모집 (다)군	특별 전형 (정의의)	학생부 교과 위주	장애인	등 대상자			약간명			약간명										
	(정원외)		특성화고 등	을 졸업한 재직자					0	0										

- *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본 대학 학사구조 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정시모집 모집인원 "0"은 수시 미충원인원으로 모집할 계획임.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① **재외국민과 외국인(입학정원2% 이내)-1명
 - ② ***초,중,고 전 교육과정 12년 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모집인원제한없음)
 - ③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모집인원제한없음)
 - ④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 제한없음(학과의 수용요건 및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약간명 별도 선발)

2.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수시]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특별 전형 (정원내)	[수시] 고른기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사업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사업대상자 화상위 자활급여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 대상자
	[수시][정시] 성인학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 30세 이상인자 (2025.03.01.기준)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수시][정시] 농어촌 학생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 지역) 또는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6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그의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해당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읍면 소재 특수 목적 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수시][정시] 장애인등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장 애인 복지법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
특별 전형 (정원외)	[수시][정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법 제2조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자 「평생교육법」 제31조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4대 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받은 자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수시] 재외국민과 외국인	재외국민과 외국인(2%이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며 재직한 기간

		,
		- 재학기간: 국외 근무자 재직기간 내 해당 국가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3년 이상 수료한 자 - 체류기간(부모):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2/3 이상 - 체류기간(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 마다 3/4 이상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가능]
	[수시]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12년 과정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수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6호에 따른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에 한 함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_	정시] 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전형유형별 반영비율

		저혀구부				전형요소 반영비율(실질반영비율)%				
모집시기	전형구분			방법	비율	학생부	수능	면접	기타	
	일반 전형 (정원내)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100(100)				
	특별전형	학생부	고른기회			100(100)				
	(정원내)	교과	성인학습자			60(59.3)		40(40.7)		
수시모집			농어촌학생	일괄 합산		60(59.3)		40(40.7)		
	특별전형		장애인등대상자		100%	60(59.3)		40(40.7)	1단계:서류전형(P/F) 2단계:면접전형(100 %)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60(59.3)		40(40.7)		
			재외국민과 외국인					100(100)	1단계:서류전형(P/F) 2단계:면접전형(100 %)	
정시모집	일반전형 (정원내)	수능위주	일반전형			30(24.8)	50(58.8)	20(16.4)		
(다)군	특별전형 (정원내)	학생부 교과	성인학습자			60(59.3)		40(40.7)		

※ 최저학력 기준: 해당없음

4.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일반전형 및 정원내/외 특별전형(성인학습자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제외)

모집시기	학년별	반영비율	율(100%)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반영교과	성적반영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성적	출결 상황		
수시모집	200/	30% 70%		80% 20%		- 1학년 최고점 2과목 - 2,3학년 최고점 4과목	석차등급
정시모집 (다)군	30%			80% 20%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사회(역사, 도덕 포함)		

^{* 1, 2}학기 구분없이 1학년 최고점 2과목, 2, 3학년 최고점 4과목, 성적 우수한 과목 총 6과목

(2) 성인학습자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모집시기	학년별 반영비율(100%) 1학년 2학년 3학년		율(100%)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100%)	반영교과	성적반영
			3학년	교과 성적		
수시모집	100%			1000/	- 학년 구분없이 최고점 6과목	석차등급
정시모집 (다)군			100% 100%		100%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사회(역사, 도덕 포함)

^{*} 학년 구분없이 최고점 6과목, 성적 우수한 과목 총 6과목

5.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100%)					
모집시기	모집단위	활용 지표	국어	영어	탐구영역 (사회/과학/직업)			
					사회	과학	직업	
	신학과		40%	30%	中 1과목			
 정시(다)군	상담심리학과	등급						
성시(나)판	사회복지학과	<u>51</u>			209/			
	언어치료학과				30%			

^{*} 등급을 활용하여 점수화하여 반영

^{*} 탐구영역 중 1과목 반영

	수능 환산점수								
수능등급	500점 만점 (수능 50% 반영)								
	국어(40%)								
	-5 01 (40 /8)	8 01(00 /6)	B 1 (00 /8)						
1	200	150	150						
2	185	135	135						
3	170	120	120						
4	155	105	105						
5	140	90	90						
6	125	75	75						
7	110	60	60						
8	95	45	45						
9	80	30	30						